

에듀컴퓨터교육학원 안전관리 규정

제정 : 2023. 04. 01
개정 : 2023. 05. 25



 에듀컴퓨터교육학원

목 차

제1장 총칙	1
제1조 (목적)	1
제2조 (적용범위)	1
제3조 (용어의 정의)	1
제4조 (안전업무 우선)	1
제5조 (기본규정)	1
제2장 조직과 직무	1
제6조 (조직)	1
제7조 (안전관리책임자)	1
제8조 (직무)	2
제3장 안전관리부	2
제9조 (부서)	2
제10조 (목적)	2
제11조 (안전관리부의 구성 및 의결)	2
제12조 (회의소집과 의결)	2
제4장 위해방지	3
제13조 (소화설비의 비치)	3
제14조 (성능보장 및 안전장치)	3
제15조 (구급용품의 비치)	3
제5장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	3
제16조 (화재예방 및 소방안전)	3
제17조 (소화기 및 소방호스 점검사항)	3
제18조 (화재발생 시 대처방법)	3
제6장 훈련생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	4
제19조 (목적)	4
제20조 (훈련생 안전수칙)	4
부칙	4
제1조 (시행일)	4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에듀컴퓨터교육학원 (이하 “학원”이라 한다)의 훈련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과 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기본방침을 규정하여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의 예방과 적절한 처리를 함으로써 인명을 보호하고 학원 자산의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 규정은 학원이 직접 운영하는 모든 시설 및 부대장비에 적용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안전관리”는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우선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통하여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기에 안전사고 발생 이전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과정을 말한다.
- ② “안전관리 체계”는 학원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조직·문서·자원과 같은 기본요소와 각종 안전관리 활동을 제도화하여 구축·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.

제4조(안전업무 우선)

모든 교직원은 사고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려, 조치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본규정)

각종 안전관련 규정 제정 시 본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장 조직과 직무

제6조(조직)

- ① 교내에서 발생 가능한 시설, 생활, 행사 등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는 총괄실장으로 한다.
- ②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위하여 현장 확인 및 안전관리 지도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, 전 교직원으로 안전관리부를 구성한다 .

제7조(안전관리책임자)

학원의 안전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총괄한다.

- ① 학원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
- ② 안전관리 규정의 제·개정
- ③ 안전사고 유형별 실무 및 현장조치 매뉴얼 제·개정 지원
- ④ 안전관리 추진실태 진단 및 평가, 개선방안 수립

- ⑤ 안전관리부 운영
- ⑥ 위기상황 정보수집 및 전파(비상연락망 구성)
- ⑦ 학원 안전관리 관련 대내외 업무

제8조(직무)

학원 안전에 관한 직무는 다음과 같다

- ① 위험에 대비한 응급조치 또는 방지조치를 하며 전기, 가스 안전장비, 소화기, 소화설비 기타 위해방지 시설 및 장비의 성능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정비 등 소방시설관리 규정 준수
- ②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를 통한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
- ③ 실습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따로 정하는 실습실 안전관리규정 준수
- ④ 재해발생시 체계적인 대응 및 원인조사와 대처방안 수립
- ⑤ 안전시설관리대장을 통한 안전에 관한 기록의 작성 비치

제3장 안전관리부

제9조(부서)

이 부서는 학원 안전관리부라고 한다.

제10조(목적)

이 안전관리부는 학원 안전관리 현안에 대한 의결과 장, 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1조(안전관리부의 구성 및 의결)

- ① 학원의 안전 환경 조성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"안전관리부"를 둔다.
- ② 안전관리부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 1.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2. 시설, 소방, 실습실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
 3. 생활, 행사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, 시행, 분석, 평가, 활동 사항
 4. 안전점검계획의 수립, 시행 및 평가
 5.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
 6.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중요 조치사항
 7.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안전관리부의 구성은 안전관리책임자, 전교직원으로 구성한다.

제12조(회의소집과 의결)

안전관리부의 소집과 의결에 관하여는 다수결의 원칙을 준용한다.

제4장 위해방지

제13조(소화설비의 비치)

소화용기구와 설비는 각기 위험물의 소화를 위하여 적절하게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4조(성능보장 및 안전장치)

- ①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기술장비 및 공기구는 성능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소정의 안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.
- ② 필요에 따라 일시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관 안전관리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15조 (구급용품의 비치)

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직원 및 학생의 응급치료를 위한 필요한 약품, 구급용 기구 및 재료를 비치하여야 하며, 필요시 신속히 이동 구급할 수 있도록 기동화 되어 있어야 한다.

제5장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

제16조(화재예방 및 소방안전)

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학원 내의 화재를 예방, 경계 또는 진압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

제17조(소화기 및 소방호스 점검사항)

- ① 항상 제자리에 위치하는지 확인한다.
- ② 소화기의 충전 및 분말액의 과/부족 상태를 확인하여 항상 충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.
- ③ 호스의 균열 및 노즐의 파손, 망설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④ 소화기가 함에 비치된 경우 팻말이 잘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.

제18조(화재발생 시 대처방법)

- ① 신고체계와 비상경보 : 외부 119로 신속히 신고한다.
- ② 비상연락망 : 안전관리책임자,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소집한다.
- ③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: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누구든지 외부전화 119로 신고하고, 교무행정실로 연락하여 건물 내에 화재발생 통보하여야 한다. 또한, 신속하게 초기 소화작업을 실시하며, 건물 내 거주·근무하는 사람들의 피난유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6장 훈련생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

제19조(목적)

훈련생의 교내·외 활동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처리를 위하여 교무부 및 행정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

제20조(훈련생 안전수칙)

- ①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한다.
- ② 담뱃불은 꼭 끄고, 확인 후 버린다.
- ③ 전기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, 전기를 차단하고 전문가를 불러 점검을 받는다.
- ④ 전기코드가 부분적으로 끊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진 경우에는 교체한다.
- ⑤ 바닥이나 벽으로 연장한 전선은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, 전기 용량에 맞는 전선을 사용한다.
- ⑥ 비상구에는 빈 박스, 쓰레기 등 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않는다.
- ⑦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, 소방서에 바로 신고한다.
- ⑧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에는 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하며 탈출하면서 열린 문이 있으면 모두 닫는다.
- ⑨ 연기가 가득한 장소를 지날 때에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.
- ⑩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 통로를 이용한다.
- ⑪ 건물 밖으로 빠져 나오면 건물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모든 인원이 탈출 하였는지 확인한다.
- ⑫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, 소방관에게 인원수와 최종적으로 확인된 위치를 알려야한다.
- ⑬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.
- ⑭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기다린다.
- ⑮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 등으로 막고, 주위에 물이 있으면 옷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쉰다.
- ⑯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린다.
- ⑰ 엘리베이터 이용은 하지 않는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칙은 2023년 05월 25일부터 시행 한다.